



제429회국회(정기회)
제6차 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이훈기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3743호)

2025. 11.

기 획 재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정지은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3
1. 출산장려금 지급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등	3

I. 개요

1. 이훈기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13743호)

가.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이훈기의원 등 11인

(2) 제 안 일 : 2025. 10. 28.

(3) 회 부 일 : 2025. 10. 29.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 사회의 저출산 위기가 급격히 악화됨에 따라 국내 기업들이 인구절벽을 막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직원들에게 최대 1억원까지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일부 기업들의 출산장려 문화를 더욱 확산하기에는 현재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 기업에 대한 혜택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어 기업들의 출산장려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서는 세제혜택을 부여할 필요가 있음.

이에 기업이 소속 직원의 출산을 장려하거나 지원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출산장려금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려는 것임(안 제104조의36 신설).

II. 주요 내용별 검토

1. 출산장려금 지급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등(정일영의원안, 윤준병의원안, 전재수의원안, 이종배의원안, 송석준의원안, 이훈기의원안)

- 가. 출산장려금 세액공제(정일영의원안, 윤준병의원안, 전재수의원안, 이종배의원안, 송석준의원안, 이훈기의원안)

현 행	정일영의원안	윤준병의원안	전재수의원안	이종배의원안	송석준의원안	이훈기의원안
<신설>	☐ 출산장려금을 지급한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제104조의34 신설) ○ 대 상 : 근로자에 계 출산장려금을 지급한 내국인 ○ 공 제 액: 출산장려금의 40%에 상당하	☐ 출산장려금 지급한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제104조의34 신설) ○ 대 상 : 근로자에 계 출산장려금을 지급한 내국인 ○ 공 제 액: 출산장려금의 50%에 상당하	☐ 출산장려금 지급한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제104조의34 신설) ○ 대 상 : 근로자에 계 출산장려금을 지급한 내국인 ○ 공 제 액: 출산장려금의 50% 이하에	☐ 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장려를 위한 세액공제 (제104조의36 신설) ○ 대 상 : 근로자에 계 출산장려금을 지급한 내국인 ○ 공 제 액: 출산장려금의 50%에 상당하	☐ 출산장려금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제104조의36 신설) ○ 대 상 : 근로자에 계 출산장려금을 지급한 내국인 ○ 공 제 액: 출산장려금의 30%에 상당하	☐ 출산장려금 지급한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제104조의36 신설) ○ 대 상 : 근로자에 계 출산장려금을 지급한 내국인 ○ 공 제 액: 출산장려금의 30%에 상당하

현행	정일영의원안	윤준병의원안	전재수의원안	이종배의원안	송석준의원안	이훈기의원안
	는 세액 공제	는 세액 공제	상 당 하 는 세액 공제	는 세액 공제	는 세액 공제	는 세액 공제
	○ 이월공제 적용	○ 이월공제 적용	○ 이월공제 적용	○ 이월공제 미적용	○ 이월공제 적용	○ 이월공제 적용
	○ 적용기한: 없음	○ 적용기한: 없음	○ 적용기한: 없음	○ 적용기한: 2030. 12. 31.	○ 적용기한: 2030. 12. 31.	○ 적용기한: 2028. 12. 31.
	○ 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 시행일: 2025. 1. 1.	○ 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 시행일: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	○ 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 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 적용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 정일영의원안 2024. 6. 12. 발의(의안번호 363), 윤준병의원안 2024. 7. 22. 발의(의안번호 2065), 전재수의원안 2024. 11. 5. 발의(의안번호 5264), 이종배의원안 2025. 3. 14. 발의(의안번호 8936), 송석준의원안 2025. 3. 19. 발의(의안번호 9078), 이훈기의원안 2025. 10. 28. 발의(의안번호 13743)

□ 각 개정안은 근로자에게 출산장려금을 지급한 내국인에게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기업의 출산장려금 지급을 장려하고 우리나라의 출생률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세액공제율과 관련하여 정일영의원안은 40%, 전재수의원안은 50% 이하, 윤준병의원안과 이종배의원안은 50%, 송석준의원안과 이훈기의원안은 30%로 각각 규정하고 있고, 적용기한의 경우 이종배의원안과 송석준의원안은 2030년 말까지 지급할 경우로 한정하고 있고 이훈기의원안은 2028년 말까지 지급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음.

□ 2022년 기준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합계출산율¹⁾이 1명 미만인 국가로서, 저출산·고령화에 따라 성장잠재력이 약화되는 상황에 직면해 있음.

[OECD 회원국의 합계출산율(2022년 기준)]

(단위: 가임 여자 1명당 명)

국가	합계출산율	국가	합계출산율	국가	합계출산율
이스라엘	2.89	슬로베니아	1.55	오스트리아	1.41
멕시코	1.82	칠레	1.54	스위스	1.39
프랑스	1.79	코스타리카	1.53	캐나다	1.33
콜롬비아	1.72	벨기에	1.53	핀란드	1.32
아일랜드	1.70	영국*	1.53	그리스	1.32
미국	1.67	스웨덴	1.52	룩셈부르크	1.31
뉴질랜드	1.66	헝가리	1.52	리투아니아	1.27
호주	1.63	네덜란드	1.48	폴란드	1.26
튀르키예	1.62	라트비아	1.47	일본	1.26
체코	1.62	독일	1.46	이탈리아	1.24
아이슬란드	1.59	포르투갈	1.43	스페인	1.16
슬로바키아	1.57	에스토니아	1.41	대한민국	0.78
덴마크	1.55	노르웨이	1.41	OECD 평균	1.51

자료: 통계청, 「2024년 인구동향조사 출생·사망통계(잠정)」, 2025. 2.

1) 합계출산율은 여자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의미함.

□ 2024년 합계출산율이 9년 만에 소폭 반등하였으나 우리나라의 출생아 수 및 합계출산율은 지속적인 감소추세에 있음.

[출생아 수 및 합계출산율]

(단위: 천 명, %, 인구 1천 명당 명, 가임 여자 1명당 명)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p
출생아 수	326.8	302.7	272.3	260.6	249.2	230.0	238.3
전년대비 증감률	△30.9	△24.1	△30.3	△11.8	△11.4	△19.2	8.3
조출생률	6.4	5.9	5.3	5.1	4.9	4.5	4.7
합계출산율	0.98	0.92	0.84	0.81	0.78	0.72	0.75

주: 조출생률이란 인구 1천 명당 출생아 수를 의미함

자료: 통계청, 「2024년 인구동향조사 출생·사망통계(잠정)」, 2025. 2.

이에 최근 여러 기업들이 출산장려금 제도를 신설하거나 강화하여 저출산 문제해결에 동참하고 있는데, 출산장려금이 손금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논란이 되자 정부는 2024년 2월 「법인세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손금산입 범위에 출산·양육 지원금을 명시적으로 추가하였음.²⁾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3의2. 임원 또는 직원의 출산 또는 양육 지원을 위해 해당 임원 또는 직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

[기업의 출산장려금 지급 주요사례]

회사명	지원내용
유한양행	- '23.8.1.부터 임직원이 자녀 1명 출산할 때마다 1,000만원 지급 (’23.1.1.~7.31.까지 출생한 아기가 있는 임직원은 500만원)
동아	- '23.1.1.부터 임직원이 자녀 1명 출산할 때마다 1,000만원 지급
한국콜마	- 출산축하금 지급(’21.8~, 첫째 100만원, 둘째 200만원, 셋째 1,000만원)
태웅로직스	- 출산축하금 지급(’24년 출산 자녀부터 자녀 첫돌 때 50만원, 두 돌부터 첫째 50, 둘째 1,000, 셋째 이상은 2,000만원)
부영	- '21.1월 이후 출산직원 자녀에게 1인당 1억원 출산장려금 지급 (’24.2월, 총 70억원 지급)
금호 석유화학	- 출산축하금 지급(’24년 상향) (첫째 500, 둘째 1,000, 셋째 2,000, 넷째 3,000만원)
HD현대	- 여성 임직원 임신·출산 축하금 지급(임신 500만원, 출산 500만원) '23.1월부터 초등학교 입학 전 임직원 자녀의 유치원 교육비 지원 (자녀 1인당 연 600만원, 3년간 최대 1,800만원)

자료 : 기획재정부

□ 또한, 2024년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부터 기업이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과 관련하여 자녀의 출생일 이후 2년 이내에 최대 두 차례에 걸쳐 지급하는 급여 전액이 비과세소득으로 분류되므로 근로자 입장에서는 수령한 출산장려금에 대하여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음.

□ 개정안은 출산장려금을 지급한 기업에 대하여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기업의 출산장려금 지급을 장려하고 근로자의 출산 비용 부담을 완화하여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하려는 취지로 보임.

2024년 5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만 25~49세 남녀에 대해 실시한 「결혼·출산·양육 인식조사」에 따르면 ‘정부의 양육수당이

늘어난다면' 출산의향이 증가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81.9%로 나타나는 등 자녀양육 비용 부담이 출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건이 더해졌을 때 출산의향이 증가한다고 응답한 비율]

(단위: %)

조건	전체	남성	여성
근무간이 줄고 육아시간이 주어진다면	85.2	83.3	87.6
육아휴직이나 단축근무를 하여도 급여가 충분하다면	88.3	87.6	89.1
정부의 양육수당이 늘어난다면	81.9	87.1	75.4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면	83.2	81.5	85.2
재택근무가 가능하다면	81.1	78.4	84.5
배우자가 육아에 함께 참여한다면	68.1	66.1	70.7
경력단절이 되지 않는다면	77.4	75.3	79.9
믿고 맡길만한 기관이나 사람이 있다면	76.4	77.9	74.5

자료 : 「결혼·출산·양육 인식조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출산장려금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하면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 기업이 늘어나고 출산장려금 단가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는데, 이는 해당 기업에 근무하는 임직원의 출산의향을 증가시켜 출산율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다만, 개정안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기업에 따라 출산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는 여력에 차이가 존재하는데, 세액공제 도입으로 대기업 위주로 출산장려금 지급이 활성화되는 경우에는 대기업 근로자와 중소기업 근로자 간 실질적 소득의 격차가 심화될 수 있음.

통계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월 평균소득 격차는 287.4만원으로 소득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출산장려금 지급 규모의 차이가 발생하여 실질적 격차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음.

[기업규모별 월 평균소득]

(단위: 만원)

구분	대기업(a)	중소기업(b)	평균소득 격차(a-b)
2023년	593	298	295
2022년	591	286	305
2021년	563	266	297
2020년	529	259	270
2019년	515	245	270
최근 5년 평균	558.2	270.8	287.4

자료 : 연도별 임금근로일자리 소득(보수) 결과, 통계청

매출 규모가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에 비해 작은 대다수의 중소기업은 세액공제 혜택이 부여되어도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둘째, 출산장려금은 업무 관련 경비로 인정되어 기업이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이미 지원 중인 점을 감안할 때 출산장려금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이 기업에 대한 과도한 지원은 아닌지 고려할 필요가 있음.

문 의 처

02)6788-5154